



# 그린뉴딜의 목적과 입법과제 그리고 법규범의 역할

그린뉴딜은 녹색성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업사회구조를 재편·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박기령  
☎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기후변화법제팀 팀장  
✉ kpark@klri.re.kr

## I. 들어가며

2019년 말 중국 우한(武漢)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폐렴바이러스가 보고된 이후, 치료제나 예방법이 아직 없는 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 COVID-19의 전세계적인 창궐현상은 2020년 상반기가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며, 결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례 없는 전염병 감염 확산으로 인해 경제위기와 함께 기존의 사회구조 전반의 재구성에 대한 압력을 받는 중이다. 감염병과 별도로, 기후변화 문제는 “변화”를 넘어서 “위기”의 단계로 심화하여 현재진행형이다. 아직 온실가스 감축이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지금의 COVID-19는 산업혁명 이후 누적된 난개발과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예측불가능한 사건의 한 예일 뿐, 다음에 어떠한 바이러스로 판데믹이 야기될 것인가는 누구도 모를 일이다. 또한 COVID-19로 인해 우리가 직면한 모든 위기는 다음에 올 더 큰 위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모든 위기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COVID-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침체와 함께 가까운 장래에 또 다른 위기로 부각되는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과 이행계획이 함께 필요한 시기이다. 2020년은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의 실현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최근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인 구조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EU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나 미국 그린뉴딜(Green New Deal)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된 비전과 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경제위기 극복·사회구조 변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목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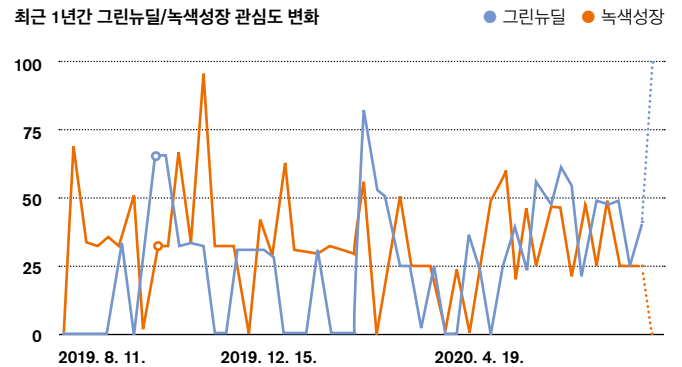
## II. 그린뉴딜과 녹색성장

2020년 7월,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정책계획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8개 핵심 정책과제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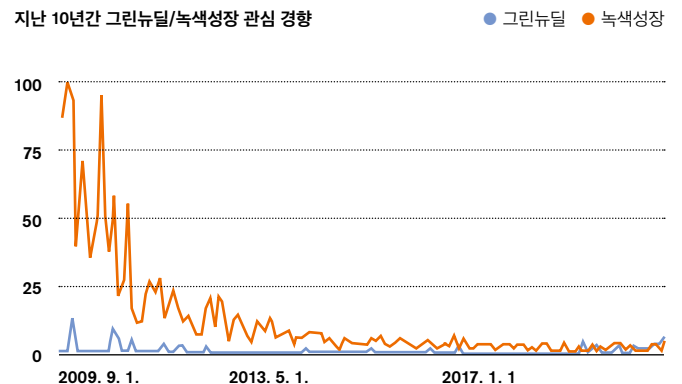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핵심 축으로 제시된 그린뉴딜은, 제21대 총선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제도화 담론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나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Google Trend를 통해 그린뉴딜, 녹색성장 등을 주제로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면, 그린뉴딜은 이미 지난 2009년 녹색성장법 제정 당시에 녹색성장 담론과 함께 관심선상에 부각되었던 용어임을 알 수 있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라는 용어 자체가 2007~2008년에 영미권의 언론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음을 감안할 때, 2009년에 녹색성장기본법 입법 당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부각된 것이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바로 이 점에 있다.

최근 1년간 그린뉴딜/녹색성장 관심도 변화



지난 10년간 그린뉴딜/녹색성장 관심 경향



2020년은 녹색성장법 제정 10년이 되는 해로서, 2009년 녹색성장기본법 입법을 준비하는 당시에, 녹색성장의 정의, 녹색성장의 목적,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녹색성장기본법이 입법된 이후,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녹색', '환경', '기후변화'의 담론을 주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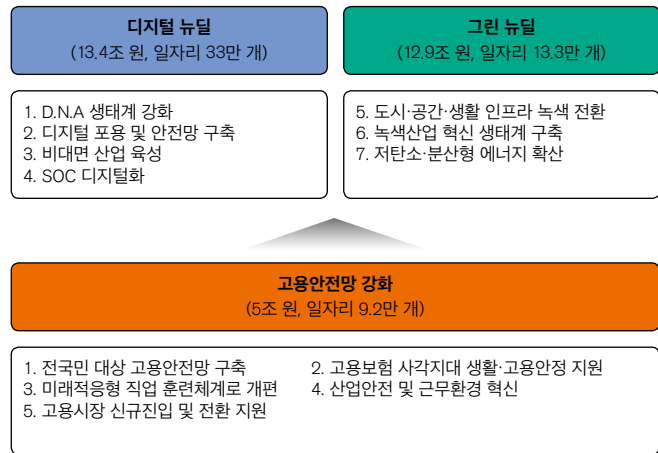
최근 제21대 국회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기본법', '그린뉴딜 특별법'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요즘, 그린뉴딜의 정의, 그린뉴딜과 녹색성장과의 비교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그린뉴딜 입법에 대한 논의 동향에 대하여 2009년 녹색성장기본법 입법 당시와 기시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녹색성장이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린뉴딜이 녹색성장과 결정적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조적 전환, 격차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녹색성장 담론을 주도하는 법제적 기반이 되었던 녹색성장기본법이 그린뉴딜의 관점에서 발전적 재구성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 III. 그린뉴딜의 핵심 목적과 입법과제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의 공통의 핵심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의 목적이 국민경제 발전과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그린뉴딜은 녹색성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업사회구조를 재편·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과 그린뉴딜 모두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지향점에 도달

한국판 뉴딜의 핵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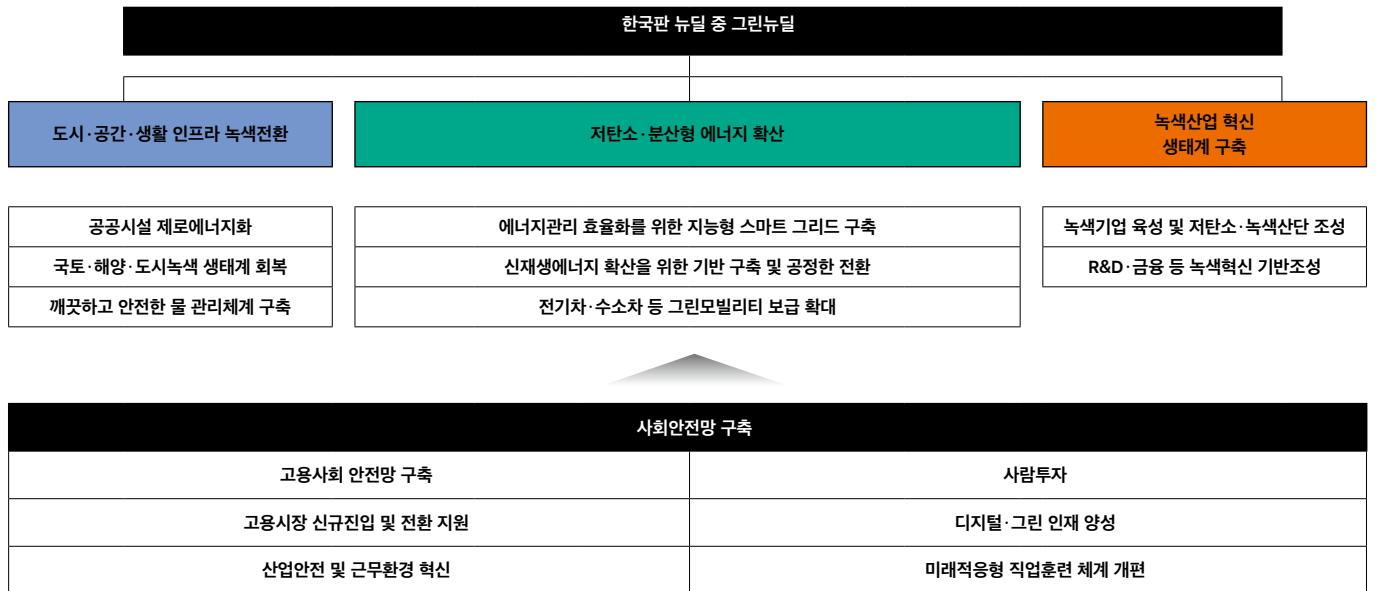


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녹색 성장에 비하여 그린뉴딜이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구성은 우리 산업의 핵심 역량과 기후위기 대응, 구조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을 아우르는 정책목표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다. 특히 그린뉴딜의 경우 탄소 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체제 전반을 친환경·탈탄소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경제구조 재편으로 인한 좌초산업 구성원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하고 재교육·전환교육을 통해 녹색경제체제의 핵심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였다.

'한국판 뉴딜'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그린뉴딜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i) 공공시설의 에너지 소비 제로, (ii) 국토·해양·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과 (iii) 물관리 체계 구축, (iv)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v)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과 에너지 전환, (vi) 그린 모빌리티의 확대와 (vii)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녹색기업 육성·녹색산업 조성과 (viii) 녹색 금융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책과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입법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린뉴딜의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



IV. 나가며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라는 헤겔의 법철학 서문의 내용은 법학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경구(警句)로, 법학이 특정 담론을 주도하기보다는, 모든 담론을 경청한 후에 규범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론의 기반이기도 하다. 이러한 헤겔의 인식론에 대하여, K. Marx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에 대응하기 위해 ‘갈리아의 수탉’에 대한 비유를 인용하여, ‘철학의 핵심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Philosophers have hitherto only interpreted the world in various ways ; the point is to change it.”)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1)</sup>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으나 적어도 녹색성장기본법에 관한 한, 적어도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녹색’, ‘기후변화’에 관하여 새로운 쟁점들을 먼저 제시했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책 수립에 있어서 환경과 생태,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제시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성장기본

법은 적어도 ‘미네르바의 부엉이’ 이기보다는 ‘갈리아의 수탉’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전대미문의 감염병 창궐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지금 이 때, 과연 법규범이, 모든 담론과 인식론이 논의된 후에 형성된 잣대를 들고 황혼을 향해 날아오르는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인식과 담론을 주도하며 새벽에 꿩을 치고 우는 ‘갈리아의 수탉’이 될 것인가의 고민은 법학자와 정책담당자들이 모두 함께 가지고 가야 할 문제의식이라 할 것이다.

1) K.Marx,《헤겔 법철학 비판(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Right)》서문, 「Theses on Feuerbach, 11th thesis,」(1843)